



BJFEZ

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
Busan-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

www.bjfez.go.kr

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절차 길잡이 (입주계약, 공장등록 등)





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현황

- 위 치 : 부산시 강서구 / 경남 창원시 진해구
- 총 면 적 : 51.2km²
- 사업기간 : 2003~2020
- 사 업 비 : 9조 4,353억
- 지역별 사업내용

지 역 명	면 적	개발방향	지 구
지사지역	13.2km ²	첨단산업, R&D센터	부산과학산업단지, 미음, 송정, 명동, 생곡
명지지역	12.8km ²	국제비즈니스, 의료·교육, 첨단부품	명지, 서부산유통, 화전, 신호
신항만지역	11.4km ²	물류, 유통, 국제업무	남측배후부지, 북측배후부지
웅동지역	9.2km ²	여가·휴양, 첨단산업, 산업·물류	웅동, 남양, 남문, 와성, 웅천·남산
두동지역	4.6km ²	첨단물류, 국제업무, 주거·지원	두동, 문화, 보배캠퍼스

● 산업단지 현황

산업단지	개발기간	조성면적 (천m ²)	관리기관	산업단지	개발기간	조성면적 (천m ²)	관리기관			
부 산	신호	1993~2007	3,121	부산경제진흥원	경 남	남양	2003~2009	293	경제자유구역청	
	화전	2003~2010	2,448	부산경제진흥원		남문	2006~2014	1,088	경제자유구역청	
	부산과학	1992~2008	1,962	부산경제진흥원 ※외투자지역: 경자청		마천	1988~2001	611	경제자유구역청(2공구)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(1공구)	
	미음	2008~2016	3,549	경제자유구역청 (연구개발특구: 특구진흥재단) ※외투자지역: 경자청						
	생곡	2009~2015	557	경제자유구역청		자유 무역 지역	신항 북측 배후 부지	2000~2014	3,083	부산항만공사
	국제산업 물류도시 (1단계)	2009~2017	5,707	경제자유구역청 (연구개발특구: 특구진흥재단)			웅동 배후 부지	2009~2014	2,486	부산항만공사
	성우	2009~2016	63	경제자유구역청						
	풍상	2010~2016	62	경제자유구역청						
	명동	2009~2018	506	경제자유구역청						
	개별 입지	서부산	2006~2012	828		경제자유구역청				

산업단지 입주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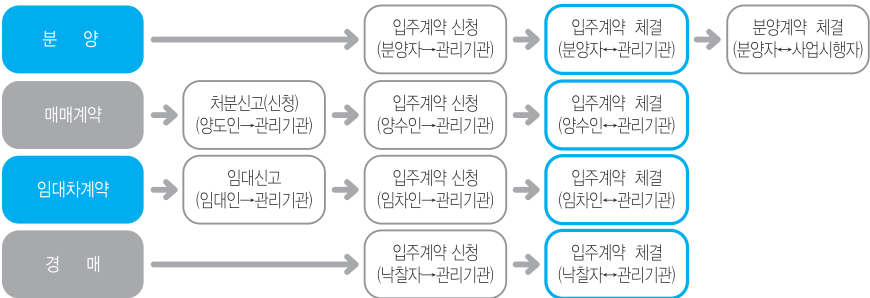
- 산업시설구역에 입주(분양/매매/경매/임차)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,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계약 ·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
- 산업시설구역 입주 전,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허용 업종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



※ 공장등록 신고 : 제조업(C10~C33 업종) / ※ 사업개시 신고 : 비제조업(C10~C33 외 업종)

01 산업시설구역 입주계약 신청

-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, 비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(경사청)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(산업집적법 제38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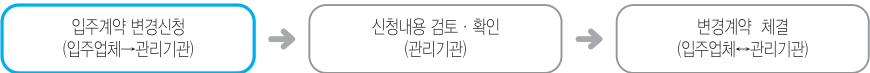
※ 분양 · 매매를 통한 취득 후 3개월, 경매를 통한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계약 미체결 시 산업용지가 환수될 수 있음

중요 확인사항

- ① 산업용지 취득하거나 임대 받기 전, 입주허용 업종 여부 관리기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
- ②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, 입주계약 해지 가능
- ③ 입주계약 미체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(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)

02 산업시설구역 입주계약 변경

- 입주계약 체결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 시, 입주계약 변경 신청(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)



계약변경 신청사항

- 회사명 · 업종 · 사업내용
- 대표자 성명(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)
- 부지면적(20%이내 변경은 제외)
- 건축면적(제조시설 면적의 20%이내 변경은 제외)

중요 확인사항

- ① 공장등록(사업개시) 후 변경사항 발생 시,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변경신청
- ② 변경계약(경미한 사항 제외) 미체결 시 1,500만원 이하의 벌금(산업집적법 제53조)
- ③ 변경계약(경미한 사항) 미체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산업집적법 제55조 제2항)
 - 경미한 사항 : 회사명, 대표자 성명, 단,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

03 공장설립완료 신고 / 사업개시 신고

-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후 기계·장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(사업개시 신고) 하여야 함(산업집적법 제15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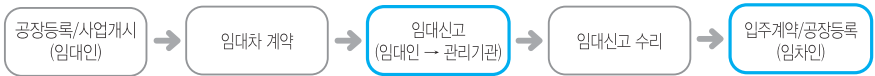
※ 공장설립완료 신고 : 제조업(C10~C33 업종) / ※ 사업개시 신고 : 비제조업(C10~C33 외 업종)

중요 확인사항

- 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가동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산업집적법 제55조 제2항)
- ② 공장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, 2개월 이내 변경신청(산업집적법 제16조 제4항)

04 임대신고

- 입주기업체가 공장등록(사업개시) 후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임대신고를 하여야함(산집법 제38조의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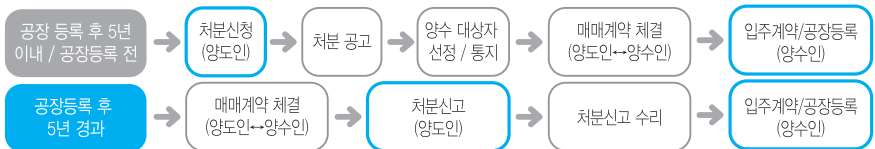
- ※ 임대인도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등록하여 사업영위 하여야 함
- ※ 공장용 건축물의 건물 임대 시,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될 수 있음(문의 : 부산 강서구청 세무과 051-970-4192)

중요 확인사항

- ① 임대차 계약 체결 전, 임차인의 입주가능업종 여부 반드시 확인
- ② 임대 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(관할구청 세무과 문의)
- ③ 임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산업집적법 제55조 제1항)
- ④ 임대기간은 5년 이상, 단,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 이상.

05 처분신청 / 처분신고

-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(공유지분 포함),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서(처분신고서)를 제출하여야함(산업집적법 제39조)



- ※ 신청대상 :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(산업집적법 제39조)

중요 확인사항

- 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입주가능 업종 해당 유무 반드시 확인
- ② 처분신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(산업집적법 제52조 제1항)
- ③ 처분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산업집적법 제55조 제1항)

06 산업용지 분할

- 입주업체는 공장설립완료 신고 후,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(건축물 있는 경우)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,650㎡ 이상으로 분할 가능하나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(산업집적법 제39조의2)



※ 산업단지 개발계획, 실시계획(또는 산업단지계획)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
-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포함

분할요건

- ① 분할 면적 1,650㎡ 이상
- ② 공유지분 처분 시, 공유지분 면적이 1,650㎡ 이상
- ③ 필요한 도로·용수·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

07 입주계약 해지 / 공장등록 취소

- 임차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체결 공장을 이전·폐업한 경우,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→ 미신고 시, 공장 등록에 따른 면허세 등 각종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

Busan-Jinhae Free Economic Zone



BIFFZ

01 담당부서 연락처

기관명	담당업무	부서	전화번호	홈페이지	비고
부산신해경제자유구역청	공정등록, 임대신고 등	부산본부 기업지원팀 경남본부 유치사업팀	051-979-5164 051-979-5234	www.bjfez.go.kr	
	건축허가, 착공신고 등	부산본부 건축환경팀 경남본부 민원행정팀	051-979-5134 051-979-5255		
	환경신고 (폐수, 대기)	부산본부 건축환경팀 경남본부 민원행정팀	051-979-5144 051-979-5252		
	취득세	세 무 과	051-970-4192		
부산광역시 강서구청	재산세	세 무 과	051-970-4204	www.bsgangseo.go.kr	
	취득세	세 무 과	055-548-4223	jinhae.changwon.go.kr	
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청	재산세	세 무 과	055-548-4231		
북부산세무서	사업자등록, 증명서 발급	민원봉사실	051-310-6221-3	b.nts.go.kr/bbs	
창원세무서	사업자등록, 증명서 발급	민원봉사실	055-239-0221-9	b.nts.go.kr/cw	

02 중소기업 지원사업

신성장기반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 청 :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bc.or.kr)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☎051-630-7400
간접경영안정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애로 해소,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 지원 신 청 :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bc.or.kr)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☎051-630-7400
기술사업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발된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사업화 추진 지원 신 청 :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홈페이지(techbiz.sbc.or.kr)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☎055-751-9853
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☎051-861-9360
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문의처 : 기술보증기금 부산영업본부 ☎1544-1120 또는 국번없이 ☎1357
경영개선 지원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문의처 : 기술보증기금 부산영업본부 ☎1544-1120
수출 애로 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화,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무료 상담 신 청 : 전화 ☎1600-7119 → 2번(수출 컨설팅) / 온라인(tradedoctor.kotra.or.kr) 문의처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고객인내센터 ☎1600-7119 → 2번(수출 컨설팅)
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기업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 지원(1년) 문의처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수출첫걸음지원팀 ☎02-3460-7540
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의 사업전환, 구조개선, 재창업 지원 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,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☎051-630-7400
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발굴, 온·오프라인 매체 활용한 홍보 지원 신 청 : ایم스타즈 홈페이지(www.imstars.or.kr) 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,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과 ☎042-481-4434
온라인 판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시장 입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품 상세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신 청 :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(smmarketing.go.kr) 문의처 :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지원팀 ☎02-6678-9365-7,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과 ☎042-481-8950
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으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, 수출금융·보증 등 지원 우대 신 청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,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
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☎042-388-0312
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의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☎042-388-0762-3
불합리한 규제 신고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제개혁 신문고(www.better.go.kr) → 건의사항 신청 중소기업 옴부즈만(www.osmb.go.kr) → 규제·애로 신고

03 부산시 취업정보센터 현황

소 속		취업정보센터			
		전화(051)	FAX(051)	위치	홈페이지
부산시청	부산일자리종합센터 (일자리창출과)	888-6911-8	888-6919	시청 연결통로	busan.work.go.kr
중구청	경제진흥과	600-4519	600-4479	중구청	
서구청	생활지원과	240-6686-7	240-6689	서쪽별관	
동구청	경제진흥과	440-4347-9	440-4239	동구청	
영도구청	경제진흥과	419-4329	419-4489	영도구청	
부산진구청	일자리경제과	605-6405-9	605-6429	부산진구청	
동래구청	경제고용과	550-4936	550-4919	제1별관	
남구청	경제진흥과	607-4347-8	607-4349	남구청	
북구청	경제진흥과	309-4347-8	309-4489	제2별관	
해운대구청	일자리창출과	749-4348	749-2909	해운대구청	
사하구청	경제진흥과	220-5691-4	220-5699	제2별관	
금정구청	일자리경제과	519-4471-5	519-4809	별관	
강서구청	창조경제과	970-4494-5	970-4499	강서구청	
연제구청	경제진흥과	851-1919	665-4349	연제구청	
수영구청	지역경제과	610-4471-7	610-4479	수영구청	
사상구청	일자리경제과	310-5190	310-4619	사상구청	
기장군청	일자리과	709-4377	709-2709	기장군청	

04 경남도 일자리지원센터 현황

소 속		일자리지원센터			
		전화(055)	FAX(055)	위치	홈페이지
경남도청	일자리종합센터	265-8219	212-1330	창원컨벤션센터	http://work.gyeongnam.go.kr
	일자리창출과	225-3357		창원시청	
창원시청	일자리센터(마산)	225-3368	225-4718	마산합포구청	http://job.changwon.go.kr
	일자리센터(진해)	225-3356		진해구청	
김해시청	일자리창출과	330-3427	330-3419	김해시청	http://biz.gimhae.go.kr
거제시청	조선해양플랜트과	639-4148	639-4119	거제시청	http://www.geoje.go.kr
양산시청	경제기업과	392-2929	392-2309	양산시청	http://www.yangsan.go.kr



BJ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
 Busan-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

46757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-26(송정동)
 Tel. 051) 979-5000 / 055) 320-5000

※ 본 안내서는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,
 법률 및 고시내용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이
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